

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】

영 주 시

영주시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9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. .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1. 개정이유

상위근거법 (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) 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개정법령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 위임에 의하여 시장이 폐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함(안 제11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관련법규 : 덧붙임

영주시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영주시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본문 중 “간이상수도시설”을 “간이급수시설”로 하고 “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.”를 “기록, 보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【영주시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】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시설의 폐지) ① (생략) ② 시장이 <u>간이상수도시설</u>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11조(시설의 폐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간이급수시설</u>을 <u>기록, 보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 법 규

□ 수도법

제12조(일반수도사업자의 인가)

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(정수시설을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,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·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,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【조례 제2730호(2002. 5. 2)】

〈수질보전과 소관〉

5. 간이상수도 인가 및 준공검사

경상북도지사 → 시장·군수에게 위임